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08 |
|----------|-----|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0. 17. 서울시장
2. 회부일자 : 2018. 10. 29
3.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울시장)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

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두 개의 조항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16. ~ 9. 5.) 결과: 의견 있음(별도 첨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법률 변경(안 제1조)

- 안 제1조는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용어의 재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복지정보시스템’을 정의한 용어의 재정의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법률 변경(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등의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신설한 규정으로써 근거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 규정 및 개선조치 마련(안 제6조제4호)

- 안 제6조제4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개선조치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으로 신설조항은 필수적 조항으로 사료됨.

3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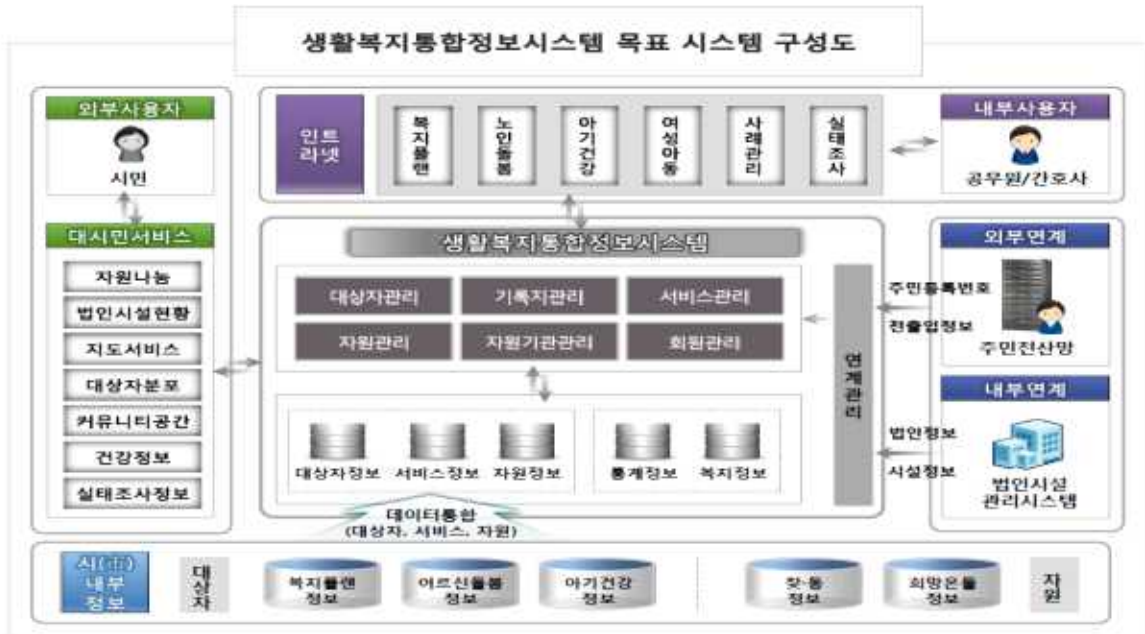
- 본 개정안은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두 개의 조항에 중복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며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을 근거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신설한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개선조치를 위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

참 고 1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명, 참석위원 찬성 8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8 |
|----------|-----|

제출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서 인용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관련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2항제1호)
- 다. 인용된 법령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두 개의 조항에 중복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7. 26. ~ 8. 16.)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된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사

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복지·건강 분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및 그 데이터

제3조제3항 중 “제2항 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정보 시스템”을 각각 “복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 제2항 제1호에 관한”을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을 “관계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인정보보호”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3조제2항제4호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u>사회복지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 정보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p>2. “관계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관할 보건소를 말한다.</p> <p>3. “개인정보”란 「<u>개인정보보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p> | <p>제1조(목적) ----- 「<u>사회보장기본법</u>」 제37조제1항----- ----- ----- -----.</p> <p>제2조(정의) ----- -----.</p> <p>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u>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u></p> <p>2. ----- <u>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u> ----- ----- -----.</p> <p>3. ----- 「<u>개인정보 보호법</u>」----- -----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① (생략)</p> <p>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p> <p>1.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조사된 개인정보 및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정보</p> <p><신설></p> <p>2. (생략)</p> <p>3.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복지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그 데이터에 관한 자료</p> <p><신설></p> <p>4. (생략)</p> | <p>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된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p> <p>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삭제></p> <p>4.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복지·건강 분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및 그 데이터</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시장은 <u>제2항 제1호</u>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p> | <p>③ ----- <u>제2항제1호 및 제2호</u>----- ----- ----- ----- -----.</p> |
| <p>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정보시스템</u>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 <p>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 -----<u>복지정보시스템</u>----- -----.</p> |
| <p>1. <u>정보시스템</u>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 <p>1. <u>복지정보시스템</u> ----- -----</p> |
| <p>2. <u>정보시스템</u>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 <p>2. <u>복지정보시스템</u> ----- -----</p> |
| <p>3. <u>정보시스템</u> 보안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p> | <p>3. <u>복지정보시스템</u> ----- -----</p> |
| <p>4. <u>정보시스템</u>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p> | <p>4. <u>복지정보시스템</u> ----- -----</p> |
| <p>5. <u>정보시스템</u>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p> | <p>5. <u>복지정보시스템</u> ----- ---</p> |
| <p>6. 그 밖에 시장이 <u>정보시스템</u>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p>6. ----- <u>복지정보시스</u> <u>템</u> -----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u>제3조 제2항 제1호에 관한</u>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u>범위 내에서</u>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장은 <u>법에</u> 따라 관계기관에서 취득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 <p>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① ---- ----- ----- <u>제3조제2항제1호</u> <u>및 제2호의</u> ----- ----- --.</p> <p>② ----- ----- ----- <u>범위</u>----- -----</p> <p>③ ----- <u>관계법률</u>----- ----- ----- ----- -----.</p> |
| <p>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① 시장은 <u>개인정보보호</u>를 위하여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 <p>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① ----- <u>개인정보 보호</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u><신설></u></p> <p><u>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제8조(개인정보 파기)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u></p> <p><u>제9조(실태조사 정보관리) ①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는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조사를 말한다.</u></p> | <p><u>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삭제></u></p> <p><u>제7조(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u> ----- ----- --.</p> <p><u>제8조(실태조사 정보관리) ① <삭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시장은 <u>제1항에 따른</u> 실태조사 사를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하고, 이를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계열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u></p> | <p>① ----- <u>제3조제2항제4호의</u> ---- ----- ----- ----- -----.</p> <p>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u><삭제></u></p> |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근거법률 변경 및 용어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하동수 (2133-7351)